의안번호	2217534
의 뢰 인	김성원 의원
회 답 일	2026.04.01.
추계번호	26G15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 조세감면 적용기한 5년 연장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1조 1,539억원, 2032년 1,475억원 등 2027~2032년 6년간 총 6조 2,728억원(연평균 1조 45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는 2027년 1조 1,382억원 등 2027~2032년 6년간 총 6조 1,893억원(연평균 1조 315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인지세는 2027년 7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총 370억원(연평균 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3억원 등 2027~2032년 6년간 총 464억원(연평균 93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2년,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합계	-11,539	-12,891	-12,577	-12,271	-11,975	-1,475	-62,728	-10,455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	-11,382	-12,729	-12,410	-12,099	-11,798	-1,475	-61,893	-10,315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116조)	-74	-74	-74	-74	-74	-	-370	-74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제121조의23제10항)	-83	-88	-93	-98	-103	-	-464	-93

주: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6조의2제1항(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2	안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3	안 제121조의23제10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구조개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자회사에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31.12.31.	–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06조의2제1항(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
2	안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
3	안 제121조의23제10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안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는 감면대상 석유류 공급량 추정치에 감면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

○ 최근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었던 점을 반영하여[1], 추계에는 조세지출 실적 대신 면세유 공급량의 증감률 추세를 활용

[표 4]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실적: 2019~2025년

(단위: 억원)

세목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교통·에너지·환경세	7,547	7,997	7,421	5,019	4,692	4,973	4,599
개별소비세	289	289	376	276	239	232	271
교육세	1,175	1,243	1,169	794	739	780	886
부가가치세	2,892	2,565	2,893	3,654	3,132	2,969	4,090
전체	11,903	12,094	11,859	9,743	8,802	8,954	9,846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추계 자료가 발생 기준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공제·환급액을 조정

○ 매년 징수 기간(부가가치세: 분기, 그 외 세목: 월)별로 공제·환급액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계

나. (안 제116조)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 개정안은 2026년중 통과되어 2027년 작성분 문서부터 적용된다고 가정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의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안 제116조)

1) 최근 유류세 인하: ('18.11.6.~'19.5.6.) 15% 인하 → ('19.5.7.~8.31.) 7% 인하 → ('21.11.12.~'22.4.30.) 20% 인하 → ('22.5.1.~6.30.) 30% 인하 → ('22.7.1.~12.31.) 37% 인하 → ('23.1.1.~'24.6.30.) 경유 37%, 휘발유 25% 인하 → ('24.7.1.~10.31.) 경유 30%, 휘발유 20% 인하 → ('24.11.1.~'25.4.30.) 경유 23%, 휘발유 15% 인하 → ('25.5.1.~10.31.) 경유 15%, 휘발유 10% 인하 → ('25.11.1.~'26.3.26.) 경유 10%, 휘발유 7% 인하 → ('26.3.27.~5.31.) 경유 25%, 휘발유 15% 인하

다. (안 제121조의23제10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관련 세수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하여 추계기간은 2031년까지 기간으로 설정함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3. 재정수반 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안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1) 추계방법

❑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유종별로 2020~2025년 실적에 대한 연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정

[표 5]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2020~2025년

(단위: 천kl, %)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휘발유	202	201	194	189	191	190	−1.2
경유	1,855	1,767	1,667	1,663	1,626	1,621	−2.7
중유	43	38	34	21	21	23	−11.7
윤활유	8	8	7	7	7	7	−3.4
LPG	15	17	19	18	19	21	7.6
등유	443	440	423	350	341	365	−3.8
합계	2,567	2,472	2,344	2,248	2,205	2,228	−2.8

주: 중유 공급량은 부생유 2호(개별소비세율 동일)를 포함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간접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합산

○ 추계기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유류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전제

[표 6] 현행 유종별 세율

유종	교통·에너지·환경세 (A)	개별소비세 (B)	교육세 (C)	자동차세(주행분) (D)	부가가치세 (E)
휘발유	529원/L[1)]	–	A×15%	A×26%	(세전가격 +제세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3)]) ×10%
경유	375원/L[1)]	–			
등유	–	63원/L[1)]	B×15%	–	
중유	–	17원/L		–	
윤활유	–	–[2)]	–	–	
LPG	–	14원/kg[1)]	–	–	

주: 1) 경유와 휘발유의 기본세율은 각각 340원/L, 475원/L이지만 탄력세율 375원/L, 529원/L를 반영하고, 등유의 기본세율은 90원/L이지만 탄력세율 63원/L를 반영하며, LPG의 기본세율은 20원/kg이지만, 탄력세율 원/L를 반영함
2) 윤활유의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해당
3) 품질검사수수료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석유제품은 0.469원/L

❑ 부가가치세 추계 시,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세전가격은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반영

○ 석유류의 유종별 세전가격은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워[2)] 최근 실적인 2020~2025년 연평균 금액을 적용

[표 7] 유종별 세전가격 현황: 2020~2025년

(단위: 원/L)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휘발유	397	638	980	837	816	763	739
경유	432	655	1186	951	900	866	832
중유	451	606	895	786	816	772	721
LPG	588	803	1119	947	971	990	903
등유	411	599	1022	917	870	841	777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www.petronet.co.kr)

(2) 추계결과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공급량은 2025년 유종별 실적에 최근 연평균 증가율(2020~2025년, 비용추계 전제 참고)을 반영하여 추정

2) 두바이유 가격(달러/배럴): ('18년) 69.66 ('19년) 63.53 ('20년) 42.29 ('21년) 69.41 ('22년) 96.41 ('23년) 82.10 ('24년) 79.58 ('25년) 69.36 ('26년3.1~26.) 129.41

[표 8]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유종별 공급량 추정: 2026~2031년

(단위: 천kl)

유종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휘발유	188	185	183	181	179	176
경유	1,578	1,536	1,495	1,455	1,416	1,379
중유	21	18	16	14	13	11
윤활유	7	7	6	6	6	6
LPG	23	25	27	29	31	33
등유	352	338	326	313	301	290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유종별 공급량 추정치에 각각의 세율 적용하여 추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휘발유 및 경유 공급량 추정치 × 세율(휘발유 529원/L, 경유 375원/L) × 조정계수*

○ 개별소비세액 = 등유, 중유, LPG 사용량 추계 × 세율(등유 63원/L, 중유 17원/L, LPG 14원/kg) × 조정계수*

* 면세유 공급 시점과 감면액 발생 시점 간 차이 등을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를 산출해 반영(2020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0.996, 개별소비세 1.002)

[표 9] 농·임·어업용 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교통·에너지·환경세	6,715	6,550	6,390	6,233	6,081
개별소비세	220	212	204	197	190

(나) 교육세 및 자동차세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추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추계

○ 교육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개별소비세 추계액) × 15%

○ 자동차세액(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26%

[표 10] 농·임·어업용 석유류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교육세	1,040	1,014	989	964	941
자동차세(주행분)	1,746	1,703	1,661	1,621	1,581

(다) 부가가치세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계

○ 부가가치세액 = 유종별 공급가액 추정액[3] × 10% × 조정계수*

- 휘발유, 경유 공급가액 = (세전가격+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주행분+품질검사수수료)×유종별 사용량 추계
- 등유, 중유 공급가액 = (세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품질검사수수료)×유종별 사용량 추계
- LPG(프로판) 공급가액 = (세전가격+개별소비세+품질검사수수료)×사용량 추계

* 실제 부가가치세 감면액과 추계액 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2020년 기준, 1.22) 적용

[표 11]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부가가치세	3,294	3,208	3,126	3,046	2,968

(라) 추계 결과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로 5년 연장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1,382억원 등 2027~2032년 6년간 총 6조 1,893억원(연평균 1조 315억원) 감소 예상

○ 추계에 활용한 석유류 공급량이 간접세 신고 기준 자료임을 감안해 징수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는 매월 공급량에 대한 석유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달 공제 및 환급되므로 당해연도 11/12, 차년도에

3)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조정계수)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

1/12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4, 차년도에 1/4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표 12]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징수): 2027~2032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누적	연평균
- 교통·에너지·환경세		-6,155	-6,564	-6,403	-6,246	-6,093	-507	-31,968	-5,328
- 개별소비세		-202	-213	-205	-197	-190	-16	-1,023	-170
- 교육세		-954	-1,016	-991	-967	-943	-78	-4,949	-825
- 자동차세(지방세)		-1,600	-1,707	-1,665	-1,624	-1,584	-132	-8,312	-1,385
- 부가가치세	국세(74.7%)	-1,845	-2,413	-2,350	-2,290	-2,232	-554	-11,684	-1,947
	지방소비세(25.3%)	-625	-817	-796	-776	-756	-188	-3,957	-660
전체		-11,382	-12,729	-12,410	-12,099	-11,798	-1,475	-61,893	-10,315

나. (안 제116조)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1) 제도개요 및 면제실적

❑ 농어민 소득 기반 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적용기한: (현행) 2026년 12월 31일 → (개정안) 2031년 12월 31일

[표 13] 개정안의 인지세 면제 대상 문서

구분	수혜자	인지세 면제 대상문서	비고
제5호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원	해당 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융자한도 1억원
제6호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원	해당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 명의의 예금·적금증서·통장	어린이예금통장 포함
제7호	-	농어촌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제9호	-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및 건축자재 외상구입 관련 서류	
제11호	-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실적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여 뚜렷한 추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감면실적: 74억원

[표 14]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지세	92	116	46	24	92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2)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경우, 인지세는 2027년 74억원 등 2027년에서 2031년까지 총 370억원(연평균 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5]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31년, 인지세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안 제116조)	-74	-74	-74	-74	-74	-370	-74

다. (안 제121조의23제10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제도 개요 및 실적

❑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동 조합중앙회 구조조정* 과정에서 설립된 법인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

○ 기존 농협중앙회는 금융, 농업경제, 축산경제, 교육지원 등 4개 분야가 한

조직 내에 공존하였으나, 2012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분리(「농업협동조합법」 '11년 3월 개정 및 '12년 3월 시행)[4)]

○ 농협중앙회가 계열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2012년 시행되었으며, 2017년부터 농협은행이 계열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까지 면세범위가 확대되어 시행

❑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제공한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실적은 2020년 56억원에서 2024년 70억원으로 증가 추세(연평균 5.7%)

[표 16]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조세지출실적	56	57	59	69	70	5.7

자료: 기획재정부

(2) 추계 방법

❑ 농협 구조개편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 및 자회사에 제공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에 따른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조세지출 연평균 증감률(5.7%)을 적용하여 추계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말에서 2031년말까지 5년 연장시, 재정수입은 2027년 83억원 등 2027~2031년 5년간 총 464억원(연평균 93억원) 감소

○ 동 기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347억원(연평균 69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117억원(연평균 23억원) 감소 예상됨

4)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5) 농협·수협중앙회에 대한 과세특례』), 국회예산정책처(2020,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표 17]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누적	연평균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안 제121조의23제10항)	−83	−88	−93	−98	−103	−464	−93
− 부가가치세(74.7%)	−62	−65	−69	−73	−77	−347	−69
− 지방소비세(25.3%)	−21	−22	−23	−25	−26	−117	−23

Ⅳ. 부대의견

❑ 없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김효경	박연서
세제분석2과	이유섭	백경엽
세제분석1과	박성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